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년 인권보고서

미주(尾註) 참조.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김씨 일가에 의해 60여 년간 통치되는 권위국가이다.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직후 그의 아들 김정은은 ‘공화국 원수’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고(故) 김일성 주석이 ‘영구주석’으로 추대되어 있다. 2014년에 실시된 국가선거는 자유선거 또는 공정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북한당국은 보위기관에 대하여 효과적 통제를 유지하였다.

북한 주민은 사법외적 처형, 실종, 임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정치범 수용소, 불공정한 재판, 사생활·가족·가정·서신에 대한 임의적 간섭을 포함하는 엄격한 주민 생활 통제와 표현·언론·집회·결사·종교·이동의 자유 부정, 정부 선택의 자유 부정, 강제 낙태, 인신매매, 독립적인 노조 결성권의 부정 및 대중 동원을 통한 재교육 체제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국내 강제노동 등 심각한 수준의 노동자 권리 제한 등 거의 대부분의 보고 대상 항목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 유린에 직면했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에서 파견된 해외 계약 노동자들 역시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처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은 면책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만연하고 있는 문제다.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과 여타 불법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고는 수없이 많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정치범, 반정부세력, 강제 송환된 망명 신청자들, 정부 관리 및 범죄행위로 기소된 자들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북한 법률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 즉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에 참가하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외국으로 도피하는 행위 혹은 일상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경제·사회·정치 상황에 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는 행위, “기만적 파괴행위” 등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법률은 절도 또는 군사시설이나 국유재산 파손, 사기, 납치, 포르노물 배포, 인신매매 등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정부는 애국 행사 도중에 잠이 든 주민들을 처형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정부가 정치범, 장애인, 중국에서 송환된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영아 살해를 자행했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국경경비대는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교도관들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2월에 한국 언론은 북한 당국이 숙청을 단행하여 국가안전보위성 관리 5명을 처형했다고 보도했다.

2월 13일에 정부의 사주를 받은 여성 2명이 팔라툼푸르 국제공항에서 1992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가스를 사용하여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보도됐다.

또한, 북한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의하면, 정부는 2013~2016년에 140명의 정부 관리를 처형한 것을 포함하여 2012~2016년에 340명을 공개처형에 처했다. 201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탈북자의 64퍼센트가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해 연도 중에 한 탈북자는 학교에서 불러나가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11명의 음악가들이 공개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이 탈북자는 대공포로 수형자를 처형하고 탱크로 시신을 짓누르는 등 처참한 광경을 묘사했다.

b. 실종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여러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에 의해 피랍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인 실종자 12명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당해 연도에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5년에 일본인 피랍에 관한 양국간 협상을 중지했다.

한국 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기타

국가의 국민들도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에서 피랍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외국인 피랍 사건 개입설을 계속 부인해왔다. 한국의 통일부는 한국전 종전 이후 517명으로 추산되는 자국 민간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은 2만 명의 민간인들이 한국전 중에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현지에서 사망했거나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위원회에 의하면, 북한은 2012년 말에 회령관리소(제22호 수용소)를 폐쇄했으며 2014년 말에는 요덕관리소(제15호 수용소) 내 서림천/금천리 구역을 철거했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당해 연도 중에 한국 언론은 탈북자를 납치하여 강제로 송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이 중국 접경 도시로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해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에 재정착한 후 중국을 방문한 탈북자를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탈북자 가족을 겁박해서 탈북자를 종용하여 중국으로 귀환하게 만든 후 체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소식통을 통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다수의 탈북자들의 목격담과 비정부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의 관계자들이 고문을 자행한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혹독한 구타나 전기 충격, 비바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도록 하는 등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을 만큼 좁은 “형실”에 최대 수주일간 감금,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도록 하기, 묶인 팔목에 의지하여 몸 매달기, 물고문, 탈진할 때까지 강제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거나 두 손을 등 뒤에 각지 끼고 쪼그리고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게 하기 등 다양한 고문과 학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산모들에게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살해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고문,
질병, 기아, 비바람에 대한 노출 또는 이러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보고해왔다.

남한 정부가 출연한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관리들이
최근 2013년까지도 수용소 내에서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 낙태를
명령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다. 강제노동수용소의 재교육
피구금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강요당했다(제7.b절 참조).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출산을 하더라도 교도관이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착취한 경우도 있다고
상기 백서는 전했다.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비정부기구,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다양한 유형의
교도소와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치범만을 수감하는 별도의 수용소가 포함된다.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는 6개 유형의 수용시설이 있는데 관리소, 교화소,
교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그리고 구류장 혹은 형무소가 바로
그것이다. 2017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성이
관리소를 관리하고, 인민보안성은 여타 수용소들을 관리한다.

보고에 의하면, 관리소 당 5천~5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들은 관리소 내에 이름 없는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개천(14호), 화성/명간(16호), 북창(18호), 청진(25호) 등 5개 관리소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함경남도 요덕(15호) 관리소 시설 내 구역이 폐쇄 혹은 축소 운영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관리소는 피수용자들이 무기한 감금되는 완전통제구역과 석방이 가능한 ‘사상개조 구역’으로 구성된다. 각종 보고에 의하면, 비정치범들은 보통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교화소로 이송된다. 한편, 정부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되는 형을 선고 받는다고 한다.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되거나 체포되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 모두 구금되는 경우도 많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교도소와 구치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조직적이고 가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와 구치소의 수감자 다수가 그곳에서 살아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피구금자와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처형 목격담을 공개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거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목욕과 세탁은 고사하고 옷조차 갈아입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국 및 국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대 수천 명의 정치범, 경제사범 및 일반

범죄자가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 「북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 따르면, 교화소와 관리소의 환경은 몹시 열악하다. 보고서는 “잔인성이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결수와 본래 정치범인 수용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강제노동수용소 제4편」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말에 함경북도 전거리(구 12호 교화소)에 여성 구역이 추가됐다. 이 여성 구역에는 약 1천 명의 여성이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주민들이다. 여성 구역은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존재 여부가 확인됐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거리 교화소는 식량 배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강제노동이 횡행하며 기아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 「북한: 전거리 12호 교화소 홍수」에 따르면, 전거리 12호 교화소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마일 그리고 회령시에서 남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고서는 12호 교화소의 수용인원이 1990년대 말 1,300명에서 최근 약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설 현황: 교도소와 수용시설의 총 수감 인원은 8만~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도소 교도관들의 육체적 학대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사례보고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교도소에서는 같은 시설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별도로 수감되고 여성들은 종종 성적학대의 대상이 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강간 사례들은 교도소 교도관들과 여타 관리들이 누리는 면책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직접적인 결과이다”라고 덧붙였다.

수감 중 사망에 관한 통계가 없지만 탈북자들에 따르면 즉결 처형, 고문, 적절한 의료시설의 부족,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굶주림과 방치, 고된 강제노동, 질병, 처형으로 인한 “극도로 높은 수감 중 사망율”을 언급했다.

또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14호 관리소에서 재소자들은 여름에는 하루 12시간 그리고 겨울에는 하루 10시간 작업을 하고 한 달에 하루를 쉰다. 관리소들은 새해 첫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한다. 12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작업을 하고, 교도관들은 65세 이상의 재소자들에게는 가벼운 임무를 맡긴다.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수용소 주식회사’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 3곳과 교화소 4곳에서 운영하는 광산에서 수감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투입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수감자는 발에 개방성 골절을 입었지만 당일에 광산으로 복귀해야 했다고 보고했다. 수감자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으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수감자는 배식량이 축소되고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절도 행위가 적발된 수감자는 임의적이고 가혹한 폭행에 내몰렸다.

비정부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182~490개 수용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률에 의해 14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형사 사건은 기각된다. 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에 의한 범죄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이 적용된다. 하지만 어떻게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거의 입수할 수 없었다. 당국은 종종 청소년들을 가족과 함께 구금하고 수용소에서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행정: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면회인을 적절히 접견했는지를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난민들의 보고에 의하면 과거 수년 간 기독교 수감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할 경우 더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종교의식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신뢰할 만한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된 경우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독립적 감시: 북한 정부가 수감 및 구금 환경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도 없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2015년 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관리들, 특히 조선인민군과 내부 보안기관들의 내부자들은 자신들의 활동과 의도를 숨기기 위해 위장하고 은폐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교도소 실태 평가를 위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을 불허했다. 또한 정부는 여타 인권 조사관들의 교도소 및 구치소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 법률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하고 있으나, 각종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이러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및 보안기관의 역할

북한의 내부 보안 조직으로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보위사령부 등이 있다. 면책이 만연해 있다. 보안기관들은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지 않았다. 정부가 보안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월에 통일부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이 국가안전보위성 조직 내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경질됐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이 실질적인 이유였는지 아니면 지도부 숙청의 일환이었던지 여부는 확실치 않았다. 이 기관들은 모두 주민감시, 체포권 유지, 특수목적의 비군사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들 간에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력 및 책임 중복현상이 존재한다.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하급기관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중복현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각 부대간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2004년, 2005년, 2009년의 형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을 통하여 기소 및 재판 중의 구금 기간 단축, 영장에 의한 체포, 자백강요에 의한 증거 수집 금지 규정이 삽입되었다. 북한이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위기관원들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은 2008년부터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검찰의 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는 조사관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최대 2개월간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보석제도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석방을 고려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기타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사법부에 의한 구속적부심 혹은 항소 제도는 법적 혹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15년에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의하면, 정치적 죄목으로 구속된 피구금자의 가족은 피구금자의 석방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 이는 정부가 이처럼 정치범을 옹호하는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제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 피구금자에게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다.

자의적 체포: 자의적 체포가 자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피구금자가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 탈북자들에 의하면 개인이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북한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독립적이며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사법절차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수사 혹은 예비 조사 단계에서 그리고 구금 시설에서 뇌물 수수와 부패 사례가 다수 보고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에 의한 부정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절차

공식적인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인 참관은 교통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절차상의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소자에게는 변호권이 주어지는데, 재판이 열릴 경우 정부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안전보위성이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사전심리”나 예비 심문을 수행하지만 재판은 사법제도에 의해 이뤄진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국가안전보위성도 재판을 수행한다고 증언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2013년 「강제노동수용소(*Hidden Gulag*)」 보고서에 의하면, 수용소 수감자의 대부분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변호사의 도움도 못 받고 수감되었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제로 존중되는지는 알 수 없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재판 없이 혹은 국제법에 규정된 적당한 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재판에 근거하여 투옥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구금의 희생자들이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전체 정치범 및 피구금자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2017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8만~12만명이 관리소에 구금되어 있다. 정치범들은 다른 피구금자들과 별도로 수용되어 있다.

비정부기구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기타 재소자 및 피구금자들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

북한 정부는 체제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이나 중국에 상주하는 종교기관들이 수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탈북 시도,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일반’ 재소자들은 사실 “국제법과 일치하는 실체적 이유 없이 구금된” 정치범들이다

민사 사법 절차 및 구제 제도

북한 헌법은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각종 보고들은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개인과 기관은 국내의 불리한 결정을 지역 인권 단체들에게 호소할 능력이 없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거의 불가침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한다. 북한 정권은 방대한 규모의 다각적 정보원 망을 활용하여 체제 비판세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사법부 허가 없이 가택수색을 하며 주민공동체 전체에 보안 검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기타 디지털 통신 내역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며, 국제 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터미디어(InterMedia)에서 실시한 2015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최근 탈북자 및 중국 내 북한 사업자)의 28퍼센트가 북한에서 국내용 휴대폰을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휴대폰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국은 휴대폰의 사용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또한, 탈북자의 14퍼센트가 중국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당국은 중국 통신망을 경유한 국제통화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접경 지역에서 수시로 휴대폰 신호를 방해하고 있었다. 보고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성은 휴대폰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중국 심카드로 이러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을 체포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간첩혐의 또는 기타 범죄혐의로 장기 수감을 포함하여 혹독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 비정부기구들이 기록한 증언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북한 관리들을 매수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충성도에 따른 계층, 즉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특정 상점, 결혼상대, 식량배급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

다수의 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연좌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수감된다. 최고 3대에 걸쳐 연좌제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비정부기구들에 의하면 가족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쫓겨난다고 한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표현 및 언론의 자유

헌법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 당한 이들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헌법에는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작성자의 신원파악에 들어가며 작성자는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선전선동부를 통해 인쇄매체, 방송매체, 책 출판,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한다. 선전선동부 내에서 출판방송부가 TV, 신문, 라디오에서 사용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여 모든 매체의 콘텐츠를 통제한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인의 방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1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가 김일성 생일 축하행사를 보도하기 위해 4월에 북한을 방문했지만 정부는 그들의 접근을 철저히 제한했다.

폭력 및 가혹행위: 북한 언론인들은 기사거리를 조사하거나 자유롭게 보도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외국 지도자의 방북 기간에, 당국은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여 보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언론인들을 엄격하게 감시한다.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언론인들이 관리나 거리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막는다.

검열 혹은 내용 제한: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별도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관리들은 해외에서 구입한 라디오를 비슷하게 개조한다. 엘리트 주민과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은 위성을 통해 국제 TV 방송에 접근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송신되는 모든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관리들은 외국 TV 방송을 시청하거나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주민을 수감하거나 처벌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영 방송 이외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나 TV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했다.

인터넷의 자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된다. 북한의 인터넷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컴퓨터중심은 허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사용자의 스크린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과거에 비해 다소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부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간혹 정부 직원들은 엄격한 감시하에 인터넷에 접근하거나 엄격한 감시하에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북한의 이동통신망은 3G를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데이터 접근권한이 국영 신문 등과 같은 북한 인트라넷을 경유하는 국가에서 허가한 소수의 기능으로 국한된다.

2016년 4월에 정부는 외국인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한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 언론인들은 2017년 2월과 4월에 평양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했다.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증가했다. 특히, 해외 언론은 1월의 해킹시도가 탈북자와 북한인권 옹호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예술작품도 통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학술여행을 철저히 제한한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씨 일가의 이상화 작업에 기여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사상적 교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대회, 무대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계속해서 차단하려고 한다.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외국 영화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은 징역형 혹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2016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2015년 설문조사에서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이 2013년에 발표한 지시사항에 따라 남한 영화를 시청하거나 남한 음악을 듣다가 걸린 사람들은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성명서가 게시된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2017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남한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배포해서 처형된 사람의 수가 지난 몇 년간 증가했다.

인터미디어는 2015년에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을 기초로 탈북자 가운데 많게는 29퍼센트가 북한 내에서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으며 면담에 참가한 탈북자의 약 92퍼센트가 북한에 있는 동안 외국 DVD를 시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반입을 금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 영화 시청을 금지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밀수 DVD를 찾기 위한 가택수색 권한을 공안에 부여했다. 인터미디어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국내용 휴대폰에 ‘서명 시스템’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기반 검열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 시스템은 휴대폰에서 외국 미디어를 조회하는 기능을 차단한다. 정부는 무작위로 휴대폰을 조사하여 불법 미디어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트레이스뷰어’라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기 사용 이력을 조사할 수 있다. 데일리NK 웹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특별 공안부대를 창설했다고 한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외부에 알려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인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

d. 이동의 자유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 여행을 면밀히 통제하였다. 북한 정부는 국내 유민, 탈북자, 강제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의 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국내 이동: 북한 정부는 국내 이동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식량 가용성,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 대한 거주 또는 진입 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관리들은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국외 여행: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근로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일부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단기 취업기회 또는 소규모 교역을 위한 단기출국서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강제이주: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단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 정부는 국내 재정착 사업을 강제 시행하여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도 강제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난민 보호

강제송환: 북한 정부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해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대폭 제한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는 물론 뇌물을 받는 대가로 월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9월에 해외 언론은 중국이 제대로 된 서류가 없는 북한인들을 구금할 시설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두만강 강변에 추가로 철조망을 설치했다.

북한 정부는 국경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김정은이 불법월경 혐의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 법률은 망명과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어린이 포함)는 5년 이상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망명 신청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역,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비자발적으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구금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구성원이 한국에 재정착한 주민 등 외국인과의 많은 접촉을 한 주민들이 특히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2017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16세의 희생자가 2014년에 강제 송환되어 국가안전보위성의 조사를 받던 도중에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한 탈북자가 보고했다.

난민들의 과거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역형 혹은 경고 조치 대상)과 반복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때때로 사형을 포함한 엄벌에 처해짐)을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중국 국경에 근거를 둔 종교기관들과 접촉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망명에 대한 접근성: 북한 법률은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3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북한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정부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은 2014년 3월이다.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정부에서 미리 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100퍼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역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투표율은 99.97퍼센트, 정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00퍼센트였다.

정당 및 정치 참여: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하였다. 평의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자유선거와 복수 정당간의 경쟁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2016년 기준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3.1퍼센트와 2.8퍼센트지만, 노동당 지도부 요직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하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공직 부패 사건에 실제로 형사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

가능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국제기구들은 고위관료들이 처벌받지 않고 부패행위에 관여한다고 대대적으로 보고하는 동안 2016년에 김정은은 당국에 의한 만연한 부패를 다루기 위해 드물게 고위급 회의를 주재했다.

부패: 2016년에 외국 언론은 김정은이 주재한 고위급 부패 관련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은 노동당 내에 만연한 것으로 여겨진 조직적인 권력남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그리고 보위기관 내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 같은 회의는 부패관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비판한다는 점에 있어서 드문 경우이다. 특히, 이 회의는 특권을 추구하고,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고, 노동당의 관료주의를 드러낸 고위 관리들의 관행을 다루었다.

12월에 언론은 김정은의 최측근인 황병서가 뇌물 및 기타 부패 관련 혐의로 10월에 당에서 축출됐다는 추측 기사를 게재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황병서의 측근인 김원홍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혐의로 노동교화소에 수감됐다.

또한,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 관료 집단으로 전용되고 있고 뇌물수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정부 및 보위기관 내의 부패를 시사한다. 다수의 부서와 당 기관이 부패 문제 처리를 담당한다.

재산 공개: 정부 관리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 여부와 부패 척결 담당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없었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협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다수의 단체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관측자들은 이 단체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 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 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 북한 정부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인권 협정을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유엔 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5월에 북한을 방문했지만, 그 방문은 인권침해 혐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다.

정부 산하 인권 기관: 정부 산하 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 유린 사례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북한 정부는 강간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률의 세부내역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억압과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분위기로 인해 교도관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다른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를 강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간 사건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7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여성권리보장법에는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은 여성 폭력이 가정 안팎에서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보고했다. 2011~2015년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5년 통일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1퍼센트가 가정폭력이 ‘일상적’이라고 답변했다.

성희롱: 1946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고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탈북자들은 보고했다.

강압적 산아 제한: 탈북자들은 보안 요원들이 강제 낙태를 행하고 있으나 이는 산아 제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고했다. 모성사망률과 피임보급률 추정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monitoring/maternal-mortality-2015/en/

차별: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탈북자들에 따르면 성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연구원은 여성차별이 임금차별, 승진 및 배정된 업무

유형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외국 언론과 싱크탱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근직을 부여 받을 확률은 낮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 외부 영역에서 일할 기회는 더 많다고 한다.

아동

출생신고: 아동은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되,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획득하기도 한다.

교육: 법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2년간의 의무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일부 아동들이 비공식적 비용이나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통제구역 내 아동들은 동일한 교과과정이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아동은 학교에서 5학년부터 매주 수 시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전 아동이 정치사상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의료혜택: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해 검증 가능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의료제도의 수혜 여부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아동 학대: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 법률은 15세 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자는 “중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률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조혼 및 강제결혼: 법률은 혼인 가능 연령을 남성의 경우 18세, 여성의 경우 17세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착취: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이나 가족을 위해 영양실조와 억압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면서 종종 인신매매범들의 성적착취의 대상이 된다. 인신매매범들은 어린 소녀들에게 북한 내 다른 지역이나 중국에서의 일자리를 약속하지만 그들을 팔아 치워 국외로 빼돌린 뒤에 강제결혼을 시키거나 가사노예로 만들거나 매춘업에 종사하게 한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유랑아동: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상당 수의 노숙 아동이 존재하는데 이들 다수가 고아로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다.

보호시설 아동: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서 재소자 간의 ‘보상결혼’의 결과로 태어난 아동들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교도관들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나 가족 구성원이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면 고문을 했다. 이 아동들은 하루 최장 12시간 동안 강제노동을 하여야 하고 수용소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수용소는 아동들에게 제한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국제아동유괴: 북한은 ‘1980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국무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납치에 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travel.state.gov/content/childabduction/en/legal/compliance.html) 참조.

반유대주의

유태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장애인

2013년에 북한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자국의 장애인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설문조사에서 탈북자의 89퍼센트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말했다.

2003년에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직장 등에서 용인되고 있다(제7.d절 참조). 국가는 상이용사를 우대하지만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체·정신 장애인들을 평양에서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수용소 내에 격리하거나, 강제 불임시술을 받게 한다. 장애인들은 공적 생활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5월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신축 건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영 언론매체는 정부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직업관련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들을 위한 학교 교육 콘텐츠를 개선했다고 2016년 7월에 보도했다. 독립적인 관측자들은 그 보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해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장애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3년에 발간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을 불문하고) 장애아 출산은 “저주”로 간주되며 의사들은 장애인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선천적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 보호 시스템을 갖춘 복지센터가 없다고 한다. 또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이 유기된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8.3 병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화학적·생물학적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인용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 행위, 차별, 기타 가혹 행위

동성애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거의 없었다. 2014년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는 동성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동성애는 건전한 사고방식과 선량한 풍속을 자랑하는 북한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

제7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북한 법률은 외국인 기업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은 노조활동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법률은 노조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불법 집회 참가자의 경우 5년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에서 설립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등 국내 노동단체들을 직접 통제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산하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북한 정부는 업무 배정 및 임금 결정 등 고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통제한다. 합작투자사업 및 외국인소유회사는 정부의 점검을 거친 명단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을 관리위원회에 편입시키며, 동 위원회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1991년 나진-선봉 지역에 최초의 경제특구가 조성됐다. 북한 내 타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적용된다. 북한 정부가 이 경제특구의 노동자들을 선발하였다. 정부는 2013년에 13개 경제특구를 신설하고 2014년 6개, 2015년에 2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2월에 한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하는

북한의 “극도로 도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특별법에 따라,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개성공업지구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특별규정 하에 운영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북한 정부는 한국 기업 경영진의 승인하에 개성공업지구 노동자 대표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7.b절 및 제7.e절 참조).

b.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

북한 법률은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때때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 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전통적으로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이다. 정치범의 경우 계속해서 벌목, 채굴, 작물 재배 및 제조와 같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재교육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 암기가 포함된다.

북한 법률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대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노동 규율과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농장 및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벽돌 제조, 시멘트 제조, 채탄, 채금, 벌목, 철 생산, 농업 및 섬유산업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 언론은 당국이 정상 업무가 종료된 야간까지 평양 시민을 러명거리 공사에 강제로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국은 다른 지방의 노동자들도 공사에 투입했다. 한국의 시민단체인 ‘열린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연간 9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단기 경제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장과 농장들이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연장했으며 수리 및 보수용 자재 구매 명목으로 곡식이나 현금을 공여할 것을 독려했다. 북한에서는 경제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률에 의해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체에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에 따른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게다가,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한국 고용주가 북한 당국에 직접 지불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북한 관리자에게 대리 지급된 급여 액수를 확인할 목적으로 근무 시간표에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각자의 월급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그 중 얼마가 본인에게 지급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제7.e절 참조).

열린북한에서 발간한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Sweatshop, North Korea*)’에 의하면, 출신성분이 낮은 16~17세 청소년은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강제노동에 투입된다. 한 노동자는 매달 임금으로 고작 120원(1달러 미만)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2016년 ‘200일 전투’ 노력동원 기간에 노동자들은 많게는 하루 17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 국영 방송은 노동자들이 영하의 기온에서 일했다고 선전했다. 한 노동자는 근로 조건이 극도로 위험했으며 아파트 한 층이 올라갈 때마다 최소한 1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출신성분이 일생의 직업을 결정하며 가장 낮은 출신성분은 위험한 광산에 배치된다.

비정부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지역이나 지방, 구역 혹은 소구역 수준에서 ‘노동단련대’를 운영하면서 단기간 동안 수감자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고 식량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상습적인 구타를 포함하여 가혹행위를 자행한다고 보고했다. 당국은 암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나 실직자를 이러한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당해 연도에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버마, 캄보디아,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기니,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리비아, 말리, 말레이시아,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세네갈, 싱가포르, 남수단, 탄자니아,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에도 진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당해 연도에 자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정부 보안 요원의 지속적인 밀착 감시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는 하루 평균 12~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휴일은 한 달에 1~2일에 불과했다. 고용주들에 의하면, 평균 임금은 월 27만원~90만원(300~1,000달러)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고용 기업은 노동자의 급여를 북한 정부에 직접 지불하며, 정부가 총수입의 70~90퍼센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소득은 월 9만원(100달러) 정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1조원 이상)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노동자가 3년 계약을 완료하고 귀국할 때까지 정부가 어떤 경우에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당국에 의한 기만이나 착취에 취약한 구조였다. 2016년 6월에 쿠웨이트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드물게 정부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파업을 했다. 노동자들은 쿠웨이트에 진출한 국영 건설회사가 월급을 현금 대신 수표로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파업에 나선 것이다. 시위의 여파로 북한 관리들이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소환했다. 2016년 3월에 카타르에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추가 급료 없이 근로시간을 늘려 일하게 하자 비슷한 파업이 발생했다.

당해 연도 중에 해외 언론과 비정부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러시아 월드컵 경기장 공사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투입되어 일당 10~15달러에 하루 11시간씩 1주일에 7일을 일하고 여권을 압류당했으며 비좁은 숙소에서 생활한다고 보고했다. 제니트 경기장에서 북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북한은 법률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 노동법과 개성공업지구 노동법 어디에도 유해한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리들이 가끔씩 주요 도로 제설 작업 등의 특별 과제 완수를 지원하거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강제노동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 영양실조, 탈진, 성장장애 등이 발생했다. 법률에 따라 강제 아동노동은 불법이지만 그러한 관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관리들이 수천 명의 아동을 부모와 함께 노동수용소에 감금해 강제노동을 하게 한다고 보고했다.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법률은 국민들이 “국가의 모든 영역과 공적 활동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노동 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종, 종교, 민족성, 기타 부당한 요인에 기초한 고용이나 직업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다. 법률에는 고용 차별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분 제도에 기초한 계급이 동등한 고용 기회나 동등한 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은 여성에게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도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고 있으며 여성이 지배하는 시장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장애인 역시 고용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e. 최저 근로 조건

국영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중공업과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 2013년에 일부 기업의 월급이 3,000~4,000원(0.30~0.40달러)에서 30,000원(30달러)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고됐다. 월급의 약 3분의 1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물로 지급된다고 한다.

북한 법률은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은 이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 근무시간 중 일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서를 학습하는 데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매주

안식일(일요일), 유급 휴가, 공휴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법률은 국가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인명 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 안전 명령”의 불이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유해한 근로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명시된 권리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 대중집회와 그에 대비한 여행연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므로 휴가나 휴식을 포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국경일의 일부를 소속 작업반원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일부 노동자들은 비공식 또는 지하 경제에서 소득창출활동을 모색하게 된다고 한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국영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간의 약정 하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제7.b절 참조).

미주(尾註): 자료 출처 관련 주의사항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 북한은 외국 정부 대표, 언론인 또는 기타 내빈에게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 또는 보고된 인권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허용

하지 않는다.